

충청북도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8월 30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8월 30일

3. 제안이유

○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를 널리 발굴 시상하여 충북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도록하고 또한, 현행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개선 운영함으로써 문화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4. 주요골자

(수상대상자 : 조례 제2조제1, 2항)

○ 수상대상 자격을 "충청북도내에 당해년도 9월 1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하는 자(과거 5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9월 1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타시도 거주자로서 도내의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하고

-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그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 부문의 문화상도 다시 받을 수 없다"로 함.

(수상부문 : 조례 제3조제3, 5호)

- "예술부문"을 "문화예술부문"으로, "새마을운동부문"을 "지역개발부문"으로 명칭 변경

(간사와 서기 : 조례 제7조제2항)

-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로 함.

5. 검토의견

충청북도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행 문화상 조례에 의해 수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충청북도 내에
당해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추천
수상하여 왔으나 이는 공적심사 및 추천시기 등에 있어 시상시기와 불부
합한 바,

이에대해 선정기준을 9월 1일로 하고 도내에서 5년이상 거주한자로 하되
타시도 거주자인 경우에도 도내의 직장에서 5년이상을 근무한 자는 수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또한 수상부문에 있어서도
종전 예술부문과 새마을운동부문을 문화예술부문과 지역개발부문으로
현실과 부합되는 명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한 번 문화상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동부문은 물론 타부문의 문화상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 편향주의적인 수상을 방지코자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문화상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 개선하여 문화상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충북지역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첨 부

. 충청북도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